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장 이성민[6574] / 보험팀장 백영기[6581] / 팀원 박수연[6587]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16054호

시행일자 2021. 03. 30.

수신 각 시도지사회장, 각 과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 과 개원의협의회장
제목 **중증치매 산정특례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안내**

1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-635호(2021.03.22.)
2. 위와 관련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2. 10월에 중증치매 산정특례 재등록이 시행되어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(신규 및 재등록)을 위한 필수 검사결과 유효기간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아래와 같이 기준을 마련하여 온 바, 이와 관련 있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검사결과 유효기간 최종 기준

검사항목	유효기간
영상검사 (뇌 MRI, 뇌 CT)	유효기간 (신규 등록) 중증치매 뇌병변이 확인된 경우 유효기간을 특정하지 ○남음 ※ 단, 신청일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(진료기록부 등의 보존)에서 정한 보존 기간(5년)은 초과할 수 없음
혈액검사	유효기간 (신규 등록) 인지기능 저하 이후 실시한 검사로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
CDR or GDS, MMSE, 신경심리 검사	유효기간 (신규 및 재등록)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

□ 적용일 : 2021. 3. 22.

□ 기타 :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관련 내용 게시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